

# I. 調 事 概 要

## 1. 調查目的

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 경영 계획수립, 학계,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,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통계조사의 모집을 파악하고 표본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

## 2. 法的根據

- 통계법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10137호)이다.

## 3. 調查沿革

- 1994년에 제1회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,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

## 4. 調查對象

- 조사기준일(12월 31일) 현재 사천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한다. 단, 다음 사업체는 제외한다.
  - 가.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·어업 사업체(법인 및 비법인 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)
  - 나.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
  - 다.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
  - 라.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
  - 마. 조사기준일 현재 개설 준비 중이거나 장기 3개월 이상 장기 휴업 상태인 사업체

## 5. 調查時期

- 가. 조사기준시점 : 2000. 12. 31 현재
- 나. 조 사 시 기 : 2001. 4. 1. ~ 4. 30(1개월)
- 다. 조사대상기간 : 2000. 1. 1 ~ 12. 31(1년간)

## 6. 調査週期

- 연간조사로서 매년 조사를 실시한다.

## 7. 調査項目

- 사업체명
- 대표자명
- 소재지
- 조직형태
- 사업체구분
- 창설년월
- 사업의 종류
- 종사자수
- 연간총매출액

## 8. 調査單位

-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, 판매, 서비스제공 등 유·무형의 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경영 단위를 조사대상으로 한다.  
(예: 공장, 상점, 작업장, 광업소, 농장, 출장소, 영업소, 본사, 본점, 연락사업소도 모두 조사)

## 9. 調査方法

- 읍·면·동 직원에 의한 면접 타계식조사를 원칙으로 한다.